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와 해설

안효상 편집주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세 나라의 혁명가로서 『상식Common Sense』(1776년)과 『인간의 권리 Rights of men』(제1부 1791년, 제2부 1792년)라는 급진적 팸플릿 저자로 유명한 토머스 페인Thomas Paine(1737~1809)이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1796)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썼다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부상과 함께 이 팸플릿은 일종의 ‘재발견’이라는 상황에 놓였다. 토지의 공유라는 관념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에게 배당한다는 아이디어가 이 글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를 재발견하는 것은 원형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단순함

에 비해 정당성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논란이 적지 않은 생각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및 규준과의 충돌 때문이다. 개인들의 삶의 윤리이자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원리인 고용노동과 이를 통한 소득이 기본소득의 관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그 목적의 정당함뿐만 아니라 그 권원title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공유common’라는 관념이다.

토머스 페인은 토지 소유를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로 구분하고, 인공적 소유는 어떤 개인의 노력에 의해 부가된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자연적 소유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소유 제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공적 소유의 토대가 되는 자연적 소유까지 특정 개인이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자연적 소유를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기초 지대”를 걷어 국가 기금을 만들고 이를 개인들에게 배당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출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단순한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출된 것이다. 미국혁명기에는 거의 제출되지 않았던 사회경제적 요구가 프랑스혁명의 진행 과정에서는 정치적 개혁만큼이나 주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이는 부분적으로 아메리카와 유럽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인데, 시장경제의 진전 속에서 도시 소생산자층의 몰락과 농민의 고통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불만은 혁명이라는 정치적 공간의 확장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으며, 자코뱅이라는 혁명적 당파는 이를 다시 혁명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로써 프랑스혁명은 ‘민중 혁명’

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테리 독재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이 속에서 생존권은 권리로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테르미도르의 반동(1794년 7월) 이후 자리 잡은 총재정부는 혁명의 정치적 측면은 유지하되 사회경제적 요구는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혁명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긴 했지만, 혁명의 동력은 상실되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안정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페인이 「헌정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왕당파의 음모와 바뵈프의 음모 같은 민중파의 봉기 시도였다.

왕당파의 음모가 반혁명 시도였다면 바뵈프의 음모는 혁명의 방법 및 혁명 이후 사회의 전망이라는 점에서 다른 견해를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롱드가 ‘권리의 평등’이라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적인 길을 추구했고 자코뱅이 ‘향유의 평등’을 추구했다면, 바뵈프는 ‘향유의 평등’을 위한 ‘재산과 노동의 공동체’라는 공산주의적 길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토머스 페인은 봉기라는 방법뿐만 아니라 재산과 노동의 공동체로서의 공산주의에도 반대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제출하는데, 그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의 구별, 자연적 소유에 대한 공유와 배당 등이다. 이는 빈곤을 비롯한 만악의 원인이 사적 소유라고 보는 관점과 사적 소유가 인류 진보의 토대라고 보는 관점 사이에서 비스듬히 개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출된 배경에는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도 있지만, 공산주의체제의 부동성과 경직성도 있었다. 소유의 분리 불가능성이라는 공산주의의 원리가

여전히 의미 있는 준거점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재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여전히 탐구해야 할 과제라 할 때 토머스 페인의 아이디어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게다가 일반 지성과 디지털 공유재의 등장 및 이에 대한 인정의 확산은 소유, 노동, 분배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번역 대본은 다음에 실려 있는 것을 이용했다. Philip S. Foner (ed.), *The Life and Major Works of Thomas Paine* (New York, 1993). 웹에서도 다양한 판본을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어 번역본은 토머스 페인, 남경태 옮김, 『토머스 페인의 상식』에 들어 있다. 구체적인 기금 형성과 운영 방식을 담고 있는 부분은 지면 관계상 생략했다. 이후에 전체를 출판할 계획이다. 각주는 모두 번역자의 것이다.

토지 정의

저자의 헌정사

프랑스공화국 입법부와 총재 행정부에게

이 글에 담긴 계획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의 기초가 되는 원칙은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연구이고 이를 성직자들의 사기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오만한 억압이 너무나 오랫동안 확고했기 때문에, 이 짧은 글을 당신들의 보호 하에 두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와 전 유럽이 그 정부와 사제 들에 의해 여전히 빠져 있는 길고 캄캄한 밤에 대해 성찰할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몰아낸 최초의 불빛에 의해 생긴 당혹감에 놀라는 것보다는 비통함을 느껴야 한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밝은 낮을 처음 보면 견딜 수가 없다. 눈이 보는 법을 배우는 게 관례이며, 어떤 상황에서 반대 상황으로 갈 때도 이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단번에 모든 잘못을 버릴 수 없듯이 우리의 모든 권리에 대한 지식도 단번에 얻을 수 없다. 프랑스에게는 자유라는 말에 평등이라는 말을 더한 영예가 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이 말을 적용하는 사태에 등급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종 평등은 잘못 이해되고 종종 잘못 적용되며 종종 침해당한다.

자유와 평등은 지적 본성이 아닌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표현하는 말이다. 두 종류의 소유가 있다. 첫 번째로 자연적 소유 혹은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에게 준 것, 즉 대지, 공기, 물 같은 것이 있다. 두 번째로 인공적 혹은 취득한 소유가 있는데, 이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후자의 경우 평등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를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비율로 기여하는 게 필요했겠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정당한 몫으로 자신의 소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연적 소유의 평등이 이 짧은 글의 주제다. 세상에 사는 모든 개인은 특정한 종류의 소유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사회를 통치하는 법률의 집행 책임을 맡을 사람들에게 대한 투표권은 자유라는 말에 내재하는 것이며, 인격적 권리의 평등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가 소유(속성)에 내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부정하긴 하지만, 선거권은 여전히 모두에게 평등하게 속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개인은 특정한 종류의 소유에 대해 정당한 생득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프랑스공화국의 현행 헌법이 인간이 만들어 낸 것 가운데 가장 잘 조직된 체제라고 간주해 왔다.* 그러나 그 원칙에 스며든 잘못을 내가 그들에게 지적한다 하더라도 예전의 내 동료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평등한 투표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헌법 내에서 이 권리는 의존하지 말아야 할 조건과 연관되어 있다. 즉 “직

* 프랑스혁명기(1789~1799)에 헌법은 세 번 만들어졌다. 1791년 헌법은 입헌군주제, 단원제, 재산 자격 선거제 등을 담고 있으며, 자코뱅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1793년 헌법은 인민주권에 근거하여 공화제, 보통선거권, 국민의 생존권 등을 담았다. 하지만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 성립한 공화국에서 제정된 1795년 헌법은 다시 재산 자격 선거제를 도입했고 권력 분산을 위해 양원제를 채택했다. 페인이 여기서 언급하는 현행 헌법은 1795년 헌법을 말한다.

접세”라고 부르는 세금과 비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의 존엄함이 낮아진다. 선거를 저열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그 권리가 불려일으킬 수 있는 열정이 약화된다. 선거권과 같은 값어치를 가진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만이 고유한 근거가 있으며 접목이나 부가물로서 변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이 수립된 이래 두 번의 좌초된 음모가 있었다. 바뵈프의 음모와 스스로를 “왕당파”라는 경멸할 만한 이름으로 장식한 다소는 모호한 사람들의 음모다.* 헌법의 원칙에 있는 결함이 바뵈프의 음모의 이유였다. 그는 이 결함으로 야기된 분개를 이용했으며, 정당하고 헌법적인 수단을 통해 개선책을 찾거나 사회에 유용한 방안을 제안하는 대신에 음모자들은 무질서와 혼란을 연장하고 자신들로 총재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는 선거와 대의제를 공식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그들은 국내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사회가 폭력으로 찬탈한 독재권을 무턱대고 자신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왕당파의 음모가 있고 몇 달 후 바뵈프의 음모가 있었는데, 그는 어리석게도 빈약하거나 천박한 수단으로 위대한 일을 한다고 착각했다. 그들은 이유가 무엇이든 모든 불만에 의존했고,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자극하려 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우두머리들은 사회가 아첨꾼, 연금 생활자, 그리고 이들의 종자들을 왕족이라는 경

* ‘최초의 혁명적 공산주의자’라 불리는 그라쿠스 바뵈프(Gracchus Babeuf(1760~1797)는 급진적인 정치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총재정부 시기에 평등주의자회를 결성하고 민중 봉기를 계획했다. 하지만 1796년 5월 체포되었고, 그 다음 해 5월 처형당했다. 1795년 10월 왕당파는 파리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실패했다. 하지만 1796년 1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봉기를 선포하면서 반란이 일어났다. 왕당파의 반란은 1796년 6월에 대체로 진압되었다.

멸적인 칭호 하에 내심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짧은 글은 사회가 매우 다른 목표, 즉 사회 자체의 유지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는 혁명의 결과 나타나게 되는 이점을 향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그러나 바비프와 그의 공모자들이 현행 헌법 하의 프랑스의 상황을 고려하고 이를 비극적인 혁명정부 하의 상황, 그리고 혐오할 만한 테러 통치 하의 상황과 비교했다면 급격한 변화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두드러지고 믿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풍요 그리고 곧 점차 번영할 것이라는 확고한 희망 대신에 기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현행 헌법의 결함과 관련해서 나는 그것이 헌법적으로 수정될 것이며 이러한 단계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함이 수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음모자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수단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현명하게 만들어진 헌법이 그 원칙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실수가 있다는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결점은 이들이 곧 느끼게 될 다른 위험을 드러낸다.

매력적인 후보들은 표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직접세를 지불하거나 이 후보들을 위해 직접세를 지불해 줄 수단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것이다. 선거권이라는 신성한 권리에서 불가침의 평등을 유지하도록 하자. 그럴 경우 공공의 안전은 가장 단단한 토대를 얻게 될 것이다. 형제애를 표하며 인사를 드린다.

당신의 예전 동료인 토머스 페인

영어판 서문

다음의 짧은 글은 1795년에서 1796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쓴 것이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출판해야 할지 아니면 평화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뀐 것도 더해진 것도 없이 처음 썼을 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지금 이를 출판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은 란다프의 주교인 왓슨의 설교다. 내 독자 가운데 일부는 이 주교가 내가 쓴 『이성의 시대』 제2부에 대한 대응으로 『성경의 변호』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의 책을 구입했었는데, 그 주제에 관해 나에게 들은 것에 그가 의존했던 것 같다.

주교의 책 말미에는 그가 썼던 글의 목록이 있다. 그 가운데 암시할 만한 것이 있다.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부자와 빈자를 만든 것에서 볼 수 있는 신의 지혜와 선함. 영국과 프랑스의 현 상태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부록 첨부』.

이 설교에 들어 있는 오류 때문에 나는 『토지 정의』를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신이 부자와 빈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뿐이다. 신은 그들에게 지구를 유산으로 주었다.

사제들은 인류의 일부가 오만함에 빠지도록 부추기는 설교를 하는 대신에 인간의 일반적 처지가 지금보다 덜 비참하게 만드는 데 자신들의 시간을 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현실 종교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을 섬기는 유일한 방식은 신의 피조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진력하는 것이다. 이를 행하지 않는 모든 설교는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허튼소리이며 위선이다.

토지 정의

이른바 문명화된 삶의 이점들을 보존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 문명이 만들어 낸 해악을 치유하는 것을 개혁 입법부의 첫 번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고려해야만 한다.

아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자랑스럽게 문명이라 부르는 그 상태가 인간man의 전반적인 행복을 크게 증진시켰는지 아니면 크게 손상시켰는지는 격렬한 논쟁을 벌일 수도 있는 문제다. 관객은 한편으로는 휘황찬란한 겉모습에 현혹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의 비참함에 충격을 받는다. 이런 문명의 두 모습 모두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른바 문명화된 나라들에서 가장 풍요로운 인간과 가장 비참한 인간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 사이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 말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유럽의 모든 타운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곤궁과 빈곤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광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빈곤은 이른바 문명화된 삶에 의해 만들어진 일이다. 빈곤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자연 상태에는 농업, 예술, 과학, 제조업 등에서 나오는 그런 이점이 없다.

인디언의 삶은 유럽 빈민과 비교할 때 휴일의 지속이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의] 부자와 비교할 때 비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문명 혹은 그렇게 불리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사회의 일부를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일부는 자연 상태의 어느 쪽보다 더 비참하게 만든다.

자연 상태에서 문명화된 상태로 가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문명화된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사냥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인간이 생계 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토지가 경작되어 있는 문명화된 상태에서 인간을 떠받쳐 주는 것보다 열 배가 넘는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가 추가적인 경작, 예술, 과학 등의 도움으로 인구가 늘면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그 나라 주민의 1/10을 제외한 나머지의 생계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해야 할 일은 자연 상태에서 이른바 문명화된 상태로 이행함으로써 사회에 생겨난 해악을 치유하고 이점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존재해야 했고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 문명의 첫 번째 원칙은 문명 상태가 시작된 이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every person은 그 이전 시기에 태어났을 사람보다 나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수백만의 처지가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태어났거나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논쟁의 여기가 없는 입장은 경작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대지는 인류의 공동재산이었으며 계속해서 공동재산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가진 상태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는 나머지 사람들과 평생 동안 토지 재산과 자연 상태의 모든 생산

물, 즉 식물과 동물의 공동소유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할 것처럼 자연 상태의 대지는 경작된 상태와 비교할 때 적은 수의 주민만을 부양할 수 있다. 그리고 대지 위에서 경작에 의해 개량된 것을 대지 자체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할 수 없는 연관으로부터 토지 소유라는 생각이 나왔다. 그럼에도 대지 자체가 아니라 개량된 가치만이 개인적 소유라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므로 경작된 토지의 모든 소유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기초 지대(ground-rent) - 나는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더 나은 용어를 알지 못한다 - 를 공동체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제안된 기금은 바로 이 기초 지대에서 나온다.

사물의 본성과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든 역사로부터 토지 소유라는 생각은 경작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전에는 토지 소유 같은 것이 없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토지 소유는 인간의 최초의 상태, 즉 수렵인의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 토지 소유는 두 번째 상태, 즉 가축 물이꾼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 성경의 역사를 현실로 인정할 경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욥도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다. 항상 셀 수 있었던 그들의 재산은 양떼와 소떼였으며, 그것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녔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아라비아의 건조한 지역에서 우물의 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일어난 것도 토지 재산이 없었음을 알려 준다. 토지를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원래 토지 소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간이 대지를 만들지 않았으며, 인간에게 대지를 점유할 자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의 일부를 영원히 자신의 재산으로 주장할 권리는 없었다. 대지의 창조자도 최초의 권리 부여 행위를 해야 하는 토지 등기소를 열지 않았

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라는 생각은 어디로부터 생겨났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경작이 시작되었을 때 이와 함께 토지 소유라는 생각이 시작되었다. 개량이 이루어지는 대지 자체와 경작에 의한 개량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겨났다. 당시에 개량으로 인한 가치는 자연적 대지의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고, 이를 흡수하였다. 결국 만인의 공동의 권리common right가 개인이 경작된 권리와 혼동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두 권리는 구별되는 종류의 권리이며, 세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사물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만 우리는 사물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는 경계를 발견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가능하며,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알게 된다. 나는 토지법Agrarian Law과 구별하기 위해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라는 제목을 이 소책자에 붙였다. 경작에 의해 개량된 나라에서 토지법보다 불의한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지의 주민으로서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의 대지의 공동소유자임에도 토지법은 그를 경작된 대지의 공동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 체제가 인정되고 난 이후 경작에 의해 부가된 가치는 경작을 한 사람 혹은 그들로부터 상속받은 사람 혹은 구매한 사람의 재산이 되었다. 원래 대지에는 하나의 소유자만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토지 소유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자연적 상속권을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들의 어려운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대지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옹호한다.

어쨌든 경작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위대한 자연의 개량 가운데 하나이다. 경작으로 인해 창조된 대지에는 열 배의 가치가 생겼다. 그

러나 이와 함께 시작된 토지 독점은 가장 커다란 해악을 만들어 냈다. 모든 민족의 절반 이상의 주민이 자연적인 상속권을 박탈당했고, 그러한 상실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있어야 했으나 없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전에는 없던 빈곤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

따라서 박탈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할 때 내가 주장하는 것은 권리이지 자선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는 무시되었고 정부 체제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 하늘 길이 열릴 때까지 제기될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권리다. 그렇기에 정의로써 혁명에 경의를 표하고, 축복으로써 혁명의 원칙이 대세가 되도록 하자.

이제까지 간단하게 이 입장의 장점을 말했으니 이제 내가 제안해야 하는 계획으로 나아가자. 그것은 다음과 같다

국가 기금National Fund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21세가 되면, 토지 소유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상실한 자연적 상속권에 대한 부분적 보상으로 15파운드스털링을 지급한다. 그리고 매년 10파운드스털링을 현재 50세에 달한 사람과 앞으로 그 연령에 도달할 모든 사람에게 남은 일생에 걸쳐 지급한다.

(중략)

이 계획의 원칙은 자선이 아니라 정의다. 모든 위대한 일에서는 자선이 아니라 더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의와 관련해서 정의를 실천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사심 없는 개인들의 선택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정의에 기초해서 이 계획을 고려할 때, 그것은 혁명의 원칙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전체의 행동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명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national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계획은 정의의 의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혁명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의 자원을 증대시킬 것이다. 식물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재산도 분지(分枝)에 의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가 사회에 진출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느냐 아니면 각자 15파운드스털링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이런 도움이 있으면 이들은 암소 한 마리, 그리고 몇 에이커의 토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농기구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회의 부담 - 양육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그러한데 - 이 되는 게 아니라 유용하고 이득이 되는 시민이 되는 길에 들어설 것이다. 이들이 작은 땅 떼기를 경작하는 데 금전적 도움이 주어진다면 국가의 영역 또한 더 잘 인정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에만 그들에게 약간의 대비를 해 주는 것이 부당하게도 문명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관행이었다(그리고 이 관행은 자선으로도 정책으로도 불릴 자격이 없다). 경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이것은 21세에 도달했을 때 모든 사람을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것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에 의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극단적인 풍요와 극단적인 결핍이 교차하는 울퉁불퉁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 비정상적인 폭력이 사회에 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할 정의를 필요로 한다. 모든 나라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빈민은 세습되는 인종이 되었으며, 이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이른바 문명화된 모든 나라에서 이 대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해야 한다. 매년 여기서 빠져나

오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지고 있다.

정의와 인륜을 근본 원칙으로 하는 계획에서 이익을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좋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에는 언제나 이점이 있다. 공적 논의에 부쳐진 어떤 계획의 성공은 최종적으로 그 원칙의 정의로움과 함께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의존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된 계획은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 계획은 개인의 이익과 더불어 공화국의 이익을 강화할 것이다. 토지 소유권 제도에 의해 자연적 상속권을 박탈당한 수 많은 사람에게 이 계획은 국가적 정의의 행동이다. 중간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채 사망한 사람들에게 이 계획은 그 자녀들에게 톤틴연금처럼 작동하며 따라서 그 기금에 넣은 돈의 합계보다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이 계획은 현재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유럽의 어떤 낡은 정부도 줄 수 없는 정도의 안전을 부의 축적에 제공할 것이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가장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순재산이 500 파운드스털링인 경우는 열 가족 가운데 한 가족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사람 모두에게 이 계획은 이득이 된다. 그 재산에서 50파운드스털링을 기금에 넣게 되는데, 만약 미성년 자녀가 두 명뿐이라면, 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각각 15파운드스털링(30파운드스털링)을 받게 될 것이고, 50세 이후에는 매년 10파운드스털링을 받을 자격을 얻을 것이다. 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큰 재산

* 17세기에 이탈리아의 로렌초 톤티(Lorenzo de Tonti)가 고안한 연금 계획에 따르면, 출자자를 몇 개의 연령집단으로 나눈 다음 집단별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며 이 금액은 해당 집단 내의 생존자들 사이에서 분배된다.

의 취득분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는 잉글랜드의 그러한 재산 소유자가 재산의 9/10를 보호받는 것에 의해 궁극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지만 이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조사하지 않고서도 그들이 이 전쟁의 주창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피트 씨가 프랑스의 자유에 맞서 오스트리아와 부르봉 왕가의 전제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이미 잉글랜드 인민에게 매년 거두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 것이 이 계획에서 매년 지급하는 총액보다 많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나는 이 계산을 토지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적personal 소유라고 부르는 것에 기초해서도 해 보았다. 토지에 기초한 계산의 근거는 이미 설명했다. 개인 재산을 계산에 넣는 이유는 비록 다른 원칙에 기초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근거가 충분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토지는 창조주가 인류에게 공동으로 준 무료 선물이다. 개인 재산은 사회의 효과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토지를 만들어 내는 게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도움 없이 개인이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개인을 사회에서 분리시킨 다음 그에게 섬이나 대륙을 준다 하더라도 그는 개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그는 부유해질 수 없다. 목적과 연결된 수단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수단이 없다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생산한 것을 넘어서는 모든 개인 재산의 축적은 그가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의, 감사, 문명의 모든 원칙에서 그러한 축적의 일부는 그 전부

* 소스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1759~1806)는 프랑스혁명기와 나폴레옹 전쟁 시기 영국 총리(1783~1801, 1804~1806)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나자 유럽의 열강은 혁명에 대한 간섭 전쟁을 준비했고, 이에 혁명 프랑스는 1792년 4월 혁명 전쟁을 선포했다. 초기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이 전쟁을 주도했으나 이후 영국이 나서게 된다.

가 온 사회에 그가 빚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제를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본 것이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사태를 상세하게 살필 경우 개인 재산의 축적은 많은 경우에 그것을 생산한 노동에 너무 적게 지불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일한 사람은 나이 들어 고통 속에 죽고 사용자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 아마 노동이 생산한 이윤에 대한 노동의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불의에 대한 변명으로, 어떤 노동자가 매일 증대된 임금을 받더라도 그가 노령에 대비해 저축하지 못하거나 중간 시기에 이를 더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가 채무 담당자를 두어 공동 기금으로 그를 보호하게 하자.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이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간다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 널리 퍼져 있는 문명의 상태는 그 결과라는 면에서 몹시 불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이라는 면에서 정의롭지 못하다. 어떤 나라에서든 조사가 시작될 경우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의식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혁명이라는 생각은 어떤 것이든 두려워한다. 소유자들의 진보를 지연시키는 것은 혁명의 원칙이 아니라 혁명의 위험hazard이다. 사태가 이리하기 때문에 정의와 인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도 사회의 일부를 비참함에서 보호하고 다른 일부를 약탈로부터 지키기 위한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전에 풍요를 감싸고 있던 미신적인 외경심, 꼼짝 못하게 하는 존경심은 이제 모든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재산 소유자들을 격렬한 사건 속에 몰아넣고 있다. 부와 화려함이 다중multitude을 매혹시키는 게 아니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비참함에 대한 모욕으로 보일 때, 부의 저속한 모습이 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때, 재산은 중대한 문제가 되며, 소유자가 안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정의의 체제뿐이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반감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재산을 생산적인 국가의 은총으로 만들고 재산이 모든 개인에게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사람의 부가 같은 비율로 국가 기금을 증대시킬 때, 그 기금의 번영이 개인들의 번영에 의존할 때, 어떤 사람이 부를 더 많이 얻을수록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더 좋은 것이 될 때, 반감은 사라질 것이고 재산은 자연적 이득과 보호라는 영구적인 기초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후략)

시대